

일제강점기 언어말살정책으로 인한 중국어회화 교재와 매체에 나타난 언어·문화상 고찰

- 『漢語獨學』, 『華語精選』, 『自習完璧支那語集成』, 『無先生速修中國自通』, 『(北京官話)支那語大海』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소은희*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본론
 - 1) 당시의 시대배경과 도서검열정책
 - 2)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並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並ニ字句訂正表』에 의거한 당시 중국어 회화교재와 각종 매체에 나타난 언어·문화상
3.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개국 이래 부국강병에 매진해온 일본은 조선반도의 패권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청을 타파한 뒤 극동의 신흥세력으로 대두하였다. 또한 중국에 대한 패권을 놓고 마침내 당시 유럽 열강인 러시아와도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 청일전쟁(1894년)과 러일전쟁(1904년)에서 거듭 승리를 거둔 일본은 뒤이어 한국을 식민지화하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대한제국 말기부터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고, 한국의 인사권마저 직접 관여하여 일본인 고위 관료를 한국에 배치하였으며, 아울러 교육을 통한 식민 정책의 초석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교수

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일본은 우리 민족의 언어문화를 말살하기 위하여 식민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도서 검열 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소은희·심영숙(2009년)의 연구의 기초 위에, 일제강점기 언어·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한 당시 중국어회화교재 『漢語獨學』(1911), 『華語精選』(1913), 『自習完壁支那語集成』(1921), 『無先生速修中國自通』(1929), 『(北京官話)支那語大海』(1938)와 일본의 『大阪朝日新聞(오사카아사히신문)』, 한국의 『동아일보』 등 각종 신문의 삽화와 광고에 나타난 시각자료들을 이용하여 도서 검열 정책의 실시로 나타난 언어·문화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당시의 시대배경과 도서검열정책

조선은 1894년 金弘集 내각에 의해 근대적 교육행정기구인 學務衙門을 설립하였고, 學務衙門은 이듬해 4월 學部로 개칭되면서 근대 학교교육의 체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 학부는 크게 각종 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학무국과 교과용 도서를 전담하는 편집국으로 나뉘어 1906년 일제의 統監府 설치 때까지 그 체제가 유지되었다. 1895년 3월에는 학무국과 편집국에 의해 각종 학교 업무와 교과용 도서의 번역·편찬·검정에 관한 사항과 도서의 구입·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도서의 인쇄에 관한 사항들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이후에는 이 일을 내부 경무국과 학부 편집국에서 공식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1906년 2월 1일 일본은 한국에 황실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統監府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을 장악한 후, 한국 민족의 의병운동과 애국 계몽운동의 격렬한 저항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1910년 8월 22일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을 강요하며 식민지로 강점하였다.

당시 서울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취임하여 일본의 지배력을 강화해 나갔으며, 각 학교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교과수업을 통해 언어·문화 말살정책과 친일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학부로 하여금 교과용 도서 검정규정을 제정하고, 교과서는 일본의 문무성 혹은 조선총독부가 편찬·발행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국가 기관에서 발행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서는 사전 검열을 하여 사용 인정을 하였다. 사립학교에서조차도 이러한 교과서를 사용케 함으로써 학교수업을 통해 공공연하게 언어·문화 말살정책과 친일교육을 강화시켜 나갔다. 나아가 1907년에는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한국이 밀사를 보낸 일을 구실로 한국 황제를 폐위시켰고, 한국 군대도 해산시켰다. 이로 인해 한국의 곳곳에서 반일의병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의병운동이 왕성해지자 일본은 군대를 증강해 반일의병을 억압하고 1907년 7월 제3차 한일신협약(정미조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해 통감의 지도를 받는다.
-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친다.
- 제3조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한다.
- 제4조 한국은 고등 관리의 임명, 면직을 통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한다.
-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초빙할 수 없다.
- 제7조 1904년 8월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고문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을 폐지한다.

위의 조약을 살펴보면 을사늑약보다 더 강력한 통감의 권한과 일본인 관리 채용 등을 강요하며 한국 내정에 관한 모든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제 7조의 조항은 사법권과 관리임용권까지 빼앗았기 때문에 이미 이 조항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려 폐지한다는 것을 알리는 조항으로, 일제가 대조선 식민지 정책의 기틀을 더욱 더 견고하게 마련해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대한제국의 공식적인 첫 학정 참여관이었던 幣原坦이 제시한 「韓國教育改良

安」은 이후 조선교육령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식민지주의 교육의 초석이 되었다. 또한 幣原坦은 교과서 편찬을 매우 중요시 여겨 일어독본 편찬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서 일어일문에 의한 이동용 교과서 편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幣原坦의 학정활동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자, 통감 伊藤博文은 당시 통감부 서기관이었던 俵孫一을 학부촉탁으로 겸임 발령하였으며 결국 幣原坦은 물러나고 교과서편찬 업무는 三土忠造에게로 승계되었다.

1908년 1월에는 隈本繁吉과 小田省吾가 三土忠造의 후임으로 들어와 교육구국운동 취체정책 및 교과서의 편찬·출판 작업, 사립학교 교과서의 취체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8월에 「私立學校令」과 「教科用圖書檢定規定」을 제정·공포하고 도서검열을 실시하여, 사립학교를 탄압하고 교과용 도서를 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의 교육학 준거에서 벗어나는 교과용 도서를 원천 봉쇄하였다.

1908년 8월 친일내각은 '교과용 도서검정규정'을 공포하여 교과서에 관한 검인정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심사규정 기준을 보면 ① 자주독립적인 민족의식 고취, ② 항일적 정신배양 등의 내용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이로써 금서정책(禁書政策)의 성격을 알 수 있다.¹⁾

1909년 2월에는 법률 제6호로 출판법(出版法)을 공포하여 출판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 했는데, 사전 검열제도의 강화로 문서나 도서를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고를 제출시켜 검열을 하고, 지방장관을 경유하고 내부대신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 또 사후 판금 제도를 도입해서 이미 출판된 저작물은 '안녕질서', '풍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만들어 이에 걸리면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각판인본(刻版印本)을 압수해 갔다.²⁾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제는 무단정치를 표방하면서 한국인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도서 검열을 더욱 강화시켜나갔다. 그러므로 당시 한국은 도서를 출판하기 위해 원고검열이라는 난관을 돌파하는 것이 매우 어려

1)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12. p.33.

2)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12. p.33.

웠으므로 도서 출판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제는 1910년부터 일시적으로 구학부 편찬 교과서를 일시 사용토록 하였으나, 한일합방 이후 조선이 식민지화 되면서 구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시세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교과서를 수정하여 개판(改版)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고, 또 병합 당시 신학제와 각 학교의 교과과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교과서 편찬 사업에 착수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우선 임시방편으로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並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並ニ字句訂正表(구학부 편찬 보통학교용 교과서와 구학부 검정 및 인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교수상의 주의와 지구 정정표)」라는 책자를 인쇄하여 백여 개의 관공립학교와 이천 여개의 사립학교에 배포하였다. 이 책자는 교과서 중에서 교재로서 부적당한 것, 또는 어구가 적절치 않은 것에 대하여 주의서와 정정표를 만들어 교수자의 참고가 되게 하였다. 이 책자의 주의서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舊學部普通學校用教科書ニ關スル注意書(구학부보통학교용 교과서에 대한 주의서)」에서는 수신서, 일어 독본, 국어 독본 및 습자첩 중 부적당한 교재에 대해 일일이 교수상의 주의를 주었으며, 「구학부 검정 및 인가 도서에 대한 주의서」에서는 ① 황실에 관한 사항 ② 국호에 관한 사항 ③ 연호에 관한 사항 ④ 축제일에 관한 사항 ⑤ 제도에 관한 사항 ⑥ 역사적 사실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한국이 일본의 피지배 국가가 됨에 따라 정정되어야 할 표현을 열거하고 있다.³⁾

그러나 일제는 필요한 사항을 약간 추가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1911년 5월부터 편수관과 편수서기를 임명하고 교과서 편찬을 착수하였다.⁴⁾ 그리하여 일제의 보통학교 교과용 도서 편찬은 1917년에 거의 완료되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는 보통학교 규칙 제22조 규정을 발표하여 사립학교에서도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朝鮮總督府內務部學務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並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並ニ字句訂正表”, 1910, 『植民地朝鮮教育政策使料集成』 第18卷, 龍溪書舍『朝鮮法令輯覽全』, 朝鮮總督府編纂.

4)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編纂教科書概要”, 1917.7, pp.1-3, 『植民地朝鮮教育政策使料集成』 第18卷, 龍溪書舍『朝鮮法令輯覽全』, 朝鮮總督府編纂.

第二十二條 普通學校ノ教科用圖書ハ朝鮮總督府ノ編纂シタルモノヲ用
 ウヘシ但シ朝鮮總督府ノ編纂シタル教科用圖書ナキトキハ朝鮮總督ノ檢定
 ヲ經タル教科用圖書又ハ朝鮮總督ノ認可ヲ受ケ他ノ圖書ヲ用ウルコトヲ得
 (교과용 도서는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것을 사용한다. 단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교과용 도서가 없을 때에는 조선 총독의 검정을 거친 교과용 도서
 또는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은 타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조선총독부가 편찬하지 않았거나 검열정책을 통과하지 못
 한 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렇듯 일제는 백 여 개의 관공립학
 교와 이천 여개의 사립학교에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
 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구학부 편찬 보통학교
 용 교과서와 구학부 검정 및 인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교수상의 주의와 지구 정정
 표)」라는 책자를 인쇄하여 배포하고, 교과서 중에서 교재로서 부적당한 것, 또는
 어구가 적절치 않은 것에 대하여 주의서와 정정표를 만들어 교수자의 참고가 되게
 하였고, 또한 검열 정책을 실시하여 한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
 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에 의거한 당시 중국어회화교재와 각종 매
 체에 나타난 언어·문화상

일제강점기 중국어 회화교재 『漢語獨學』(1911), 『華語精選』(1913), 『自習完
 璧支那語集成』(1921), 『無先生速修中國自通』(1929), 『(北京官話)支那語大
 海』(1938), 일본의 『大阪朝日新聞(오사카아사히신문)』, 한국의 『동아일보』 등
 각종 신문의 삽화와 광고에 나타난 시각자료 등에는 1910년 조선총독부 소속 內
 務部學務局이 발포한 문서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
 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구학부 편찬 보통학교용 교
 과서와 구학부 검정 및 인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교수상의 주의와 지구 정정표)」
 의 교수상의 주의점들이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제는 이렇게 각 학교에 교

수상의 주의점을 발포하고 도서검열정책을 펼쳐 한민족의 언어·문화 말살정책을 위한 교과서 정책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본 논문은 당시 중국어회화교재 및 신문, 광고상에 등장하는 國號, 年號, 首都, 祝祭日, 皇室에 관한 어휘사용의 실례를 들어, 일제가 얼마나 한국의 언어와 사상을 말살하며 일제에 동화시키려 했는지 당시의 언어·문화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國號(朝鮮)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關한 教授上의 注意」)(附錄 祝祭日略解)에는 국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歷史、地理、讀本等書에서李朝太祖-業을創호야國號를朝鮮이라定호고、降호야前太皇帝光武元年至호야大韓이라改稱호事를記호者-多호는、如斯호事項을教授호境遇에는該國號는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九日勅令第三百十八號로써廢止호고、朝鮮이라稱호기로定호事를知케호사。”

(‘역사·지리·독본 등 교과서에서 李朝太祖의 업(業)을 創하여 국호를 朝鮮이라 정하고, 전 太皇帝 光武 元年(1897년)에 지(至)하여 大韓이라 이름을 바꾼 것을 기록한 것이 많으나 이러한 사항을 교수할 경우에는 이 국호(大韓)는 1910년 8월 29일 칙령 제 318호로 폐지하고, 朝鮮이라 부르기로 정한 것을 알게 한다.’)

(內務部學務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朝鮮譯文), 1910, 頁11.)

위의 자료로 國號가 大韓帝國에서 朝鮮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1911년 宋憲奭이 편찬한 중국어 회화교재 『漢語獨學』⁵⁾에서

5) 『漢語獨學』은 明治 44년(1911년)에 新舊書林에서 초판 되었다. 이 책은 전체 1권 109페이지로 이루어졌고, 警務局의 기관지인 『경무월보(警務月報)』에 아래 표와 같이 일제의 허가를 받은 출판물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제의 도서검열 인가를 거친 당시의 중국어회화

國號가 大韓帝國에서 朝鮮으로 바뀐 실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예문은 아래와 같다.

① 凡例

本書는支那語學을獨習케 하기爲하야編成함

支那語의音을漢字右邊에朝鮮文으로懸付하야自習의便宜를興하고下에朝鮮語로譯하야意味의如何함을詳釋함

支那語의發音에上聲去聲上平下平의四聲이有하니朝鮮文으로는完全히區別기難함으로其近似함으로識別하얏스니覽者는極히注意함이可함

本書는六十課로分排하야會話와常言을表示하고下附錄에索引을添하야各課中難澁한字를參考解得케함

(본서는 지나어학(중국어)를 스스로 학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

지나어의 음을 한자 우편에 조선문으로 표기하여 자습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래에 조선어로 번역하여 의미가 어떠한지 상세하게 해석하였다.

지나어의 발음에 상성·거성·상평·하평 사성⁶⁾이 있으나 조선문으로는 완전히 구별하기 어려움으로 근사한 음으로 식별하였으니 훑어보는 사람은 극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본서는 60과로 나누어 회화와 속담을 표시하고 아래의 부록에 색인을 첨부하여 각 과에서 어렵고 복잡한 글자를 참고하여 뜻을 깨쳐 알게 하였다.)

② 是高麗的紅參 (『漢語獨學』頁5)

이느도선에홍삼이오

위의 예를 통해, 『漢語獨學』 예 ① 凡例에서 “朝鮮語”와 “朝鮮文”으로 표기한

교재라는 점과 편찬년도를 엿볼 수 있다 『漢語獨學』은 현재 선문대 중한 번역 문헌연구소,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924년 廣益書館에서 출판된 교재를 연구의 저본으로 삼았으며, 내용은 교재의 초판연도를 기준으로 분석, 서술해 나갔다.

四月中發行許可ヲ與ヘタル出版物左ノ如シ (4월 중 발행허가를 얻은 출판물은 왼쪽과 같다)

許可月日	名稱	著作者	發行者
四月二十六日	漢語獨學	宋憲奭	宋憲奭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警務月報』 제11호,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1911, p.133.

6) 상성(上聲)은 현대 중국어 성조의 제3성, 거성(去聲)은 제4성, 상평(上平)은 제1성, 하평(下平)은 제2성을 말한다.

사실과 예 ②에서 고려를 “도선(조선)으로 번역한 걸로 보아,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병조약의 체결과 1910년 8월 29일 조선총독부 소속 內務部學務局이 발포한 문서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關한 教授上의 注意」(附錄 祝祭日略解)의 규정에 따라, 宋憲奭이 『漢語獨學』을 편찬한 1911년 4월에는 國號가 이미 大韓帝國에서 朝鮮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1913년 高永完이 편찬한 중국어 회화교재 『華語精選』과 1929년 발행된 『無先生速修中國自通』⁷⁾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③ A : 貴處是那一國 ?

귀하는 어느 나라에 사십니까?

B : 弊處是朝鮮京城。

저는 조선 경성에 삽니다.

(『華語精選·頁194』)

④ A : 金 那是叫甚麼江?

저것은 무슨 강이라 합니까?

B : 朴 那個江就是漢江。

저 강은 곧 한강이오

A : 金 啊,漢江是朝鮮的第一大江麼 ?

아 한강은 조선에 제일 대강입니까?⁸⁾

B : 朴 是,對了,也有兩個鐵橋。

네 옳소이다 또 철교도 둘 있지요

A : 金 一個是鐵路用的,一個呢?

하나는 철로에 쓰고 하나는 무엇합니까?

B : 朴 就那一個是人道橋用的。

곧 그 하나는 인도교로 씁니다.

(『無先生速修中國自通·第二十一課 溜達去』)

7) 일제 강점기 중국어자료총서인 鮮文大學校中韓翻譯 文獻研究의 교주본 2008 『無先生速修中國自通』에서 저자가 白松溪라고 표기되어 있다.

8) ‘한강은 조선에 제일 대강입니까?’는 저자가 한국말로 번역한 원문이다. 마땅히 ‘한강은 조선에서 제일 가장 큰 강입니까?’라고 수정해야 한다.

위 ④의 예문으로 당시 조선에서 한강이 제일 큰 강이었으며, 한강에는 철로로 쓰이는 철교와 인도교로 쓰이는 철교 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年號(明治)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關한 教授上의 注意」)(附錄 祝祭日略解)에 연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歷史等書에 前韓國皇帝의 即位와 共히 隆熙라 改元 亨 事를 記 亨 者-有 亨 尼、如 事 亨 事 項을 教 授 亨 境 遇에 是 舊 韓 國의 年 號 隆 熙 是 隆 熙 四 年 八 月 二 十 九 日 을 限 亨 廢 止 되 고、同 日 로 부 터 以 後 是 明 治 를 用 亨 이 當 然 亨 事 를 知 케 亨 知 라。”

(내무부 학무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朝鮮譯文), 1910, 頁12.)

(‘역사 등 책에 전 한국 황실의 즉위와 함께 융희(隆熙)라 고친 것이 있으니 이러한 사항을 가르칠 경우에는 舊韓國의 연호 융희는 융희4년(1910년) 8월 29일부터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이후에는 明治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 사실임을 알게 한다.’)

1911년 출판된 『漢語獨學』과 1929년 발행된 『無先生速修中國自通』에는 한국의 연호 隆熙가 1910년 8월 29일부터 폐지되고 일본의 年號 明治가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 ① A : 現在明治多少年
지금은明治몇히오닛가
- B : 現在明治四十四年
지금은 明治四十四년이오

(『漢語獨學』·頁15)

- ② A : 金 朴先生那是叫甚麼?
朴 先生 저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B: 朴 這是日本明治天皇的廟。
이것은 일본 명치 천황 사당이오

A: 金 做廟門花錢不少罷。
사당 문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었스리다

B: 朴 那都是總督府當的。
그것은 다 총독부 담당이오

(『無先生速修中國自通·第二十一課 溜達去』)

明治(메이지)시대는 1868년(메이지원년)부터 메이지 천황이 사망한 1912년 7월까지 약 45년 동안을 말한다.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關한 教授上의 注意」)(附錄 祝祭日略解)에 기재된 “舊韓國의 年號 隆熙는 隆熙4년(1910년) 8월 29일부터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이후에는 明治의 年號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임”이라는 내용과 같이, 1911년 4월 도서검열을 통과한 당시 중국어회화교재 宋憲奭의 『漢語獨學』에는 이미 일본의 年號가 기재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1929년 출판, 발행된 『無先生速修中國自通』에도 明治의 年號가 여전히 예문으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기한 예문 ②에 근거하면, 일본은 당시 조선총독부 관할로 많은 돈을 들여 일본 천황의 사당을 만들어 조선인들에게 일본 천황을 경배케 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3) 首都(京城)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關한 教授上의 注意」(附錄 祝祭日略解)에는 國語讀本卷四第十五課에 실려 있는 한국의 수도 漢城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漢城은 본래 韓國의 國都이나 한국은 지금 조선이라 부르며 大日本帝國의 일부로 되었기에 漢城은 이미 國도가 아니며 京城이라 고친다.’

이러한 사실들은 1911년 중국어회화교재 『漢語獨學』과 1938년 文世榮에 의해 집필된 『(北京官話)支那語大海』에서 그 실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예문은 아래와 같다.

① 我在京城做買賣。
경성에서장사합니다

(『漢語獨學·頁11』)

② 我是朝鮮, 你多咱到這兒來的?
저는 조선입니다. 당신은 언제 여기에 오셨나요?
是今年正月。
올해 정월에 왔어요.
你會說朝鮮話麼?
조선말을 하실 수 있나요?
我會一點兒, 不多。
약간 할 줄 압니다. 많지는 않아요.
是在那兒學的?
어디서 배우셨어요?
我們就在京城那兒學的。
우리는 京城에서 배웠어요.

(『(北京官話)支那語大海·第三課 初見』)

在那兒買的?
어디에서 사셨어요?
在京城買的。
경성에서 샀어요.

(『(北京官話)支那語大海·第九課 這是誰的』)

이와 같이 국어독본에 실려 있는 한국의 수도 漢城이 1911년 출판된 중국어회화교재 『漢語獨學』과 1938년 『(北京官話)支那語大海』에서는 漢城이란 수도 명칭이 사라지고 京城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1938년과 1939년 『동아일보』에서도 京城이란 어휘가 사용되고 있음을 실례로 들 수 있다. 기사 내용을 통해 일본이 중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조선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활용하고자, 각급 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조선 곳곳

에서 지나어 강습회를 연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시국대응 전조선사상보국연맹경성지부 대륙진출부(時局對應全朝鮮思想報國聯盟京城支部大陸進出部)에서는 오는 一월 十八일부터 지나어강습회(支那語講習會)를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개최한다고 한다.

場所 京城保護觀察所大講堂 受講期間 昭和十四年一月十八일부터五月十五日까지

授講日時反時間 每週三回(月 水, 金) 午後七時부터 九時까지 會費

◇入會金 入會金壹圓會費月貳圓

講習程度 初步부터中等程度까지

講習事項 支那語의◇普, 會話文法, 日用消恩文, 支那事情 講師 漢城華◇學校의◇”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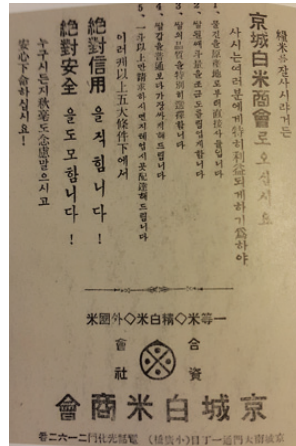
“경성공립상업학교에서는 지나어를 필수과목으로 신설하고 매주일四시간 교수하기로 되었는데 중등학교에서는 최초의 시험이니만치 기대된다.”10)

다음은 1920년대 남대문동에 있던 경성백미상회의 쌀 광고이다. 이런 광고 문구에도 본래 韓國의 수도인 漢城이란 어휘가 사라지고, 京城이란 어휘가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동아일보』 1939년 1월 14일 제2면, 支那語講習 大陸進出部 主催.

10) 『동아일보』 1938년 4월 23일 제2면, 京城商業에 支那語教授.

④



[그림 1] [1920년대 남대문동에 있던 경성백미상회의 쌀 광고]¹¹⁾

위의 광고는 ‘절대 신용, 절대 안전’을 모토로 삼고, 원산지 직구매와 품질보장, 신속배달 등을 선전하고 있다. ‘추호도 염려 말으시고 안심 하십시오’란 문구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일본 사람들의 많은 압박과 핍박 속에서 조선 민중의 소박한 절규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당시에도 원산지 직구매와 신속배달과 같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한민족의 언어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한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關한 教授上의 注意」에 의거한 검열 정책의 일환으로 ‘漢城’을‘京城’으로 개칭한 점은, 이러한 작은 광고 문구에도 교수 상의 주의점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祝祭日(天長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 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關한 教授上의 注意」(附錄 祝祭日略解))에는 祝祭日에 대하여 다음과 같

11) 노형석, 『한국 근대의 풍경』, 2006, p.128.

이 수록되어 있다.

“讀本等中에開國紀元節又는乾元節에關한教材를掲載한者-有하니、然이
는舊韓國慶祝日은 既히廢止된者인즉 自今으로此等の教材는教授치말고、
大日本帝國國民으로하야當然히帝國의祝祭日을遵守할事를教히며、且本書
의附錄으로는 祝祭日에 關한 一般의 注意와 各祝祭日의 要領을 授할지라”
(讀本 등에 開國紀元節 또는 乾元節에 關한 것을 게재한 것이 있으나
舊韓國慶祝日은 즉시 폐지된 것인즉 지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교재는
가르치지 말고, 大日本帝國國民으로서 당연히 帝國의 祝祭日을 준수해야 할
것을 가르치며, 또한 본서의 부록으로 祝祭日略解에 의하여 祝祭日에 관
한 일반적인 주의와 각 축제일의 요령을 가르칠 것이다.)
(내무부 학무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並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
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並ニ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朝鮮
譯文), 1910, 頁13.)

위의 교수상의 주의점에는 韓國 國民을 大日本帝國의 國民으로 못 박고 당연
히 日本帝國의 祝祭日을 준수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며, 祝祭日에 관한 일반적
인 주의와 각 축제일의 요령을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다. 또 祝祭日略解에서는 四
方拜(1월 1일)·元始祭(1월 3일)·孝明天皇祭(1월 30일)·紀元節(2월 11
일)·神武天皇祭(4월 3일)·天長節(11월 3일)·神嘗祭(10월 17일)·新嘗祭
(11월 23일)·春季皇靈祭(春分日)·秋季皇靈祭(秋分日) 등을 축제일로 명시하
여, 한국인도 내지 일본과 마찬가지로 집집마다 국기를 달고 성의를 표하며, 학교
직원과 학생들에게 축제일의 요령을 주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인에게도 축
제일의 요령과 의의를 설명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祝祭日에는 天皇의 御書宮中에서 祭祀를 행히시며、各官衙學校等은休業
하고、一般人民은各戶에 國旗를揭揚하야 其誠意를 表함으로 例를삼나
니、自今朝鮮에서도內地와 同히此例에依호者이나、併合後、日이尙淺하
니、從하야帝國祝祭日의意義에昭詳치못한者-不尠호터임으로、茲에祝祭日
略解를製하야注意書訂正表後에添附하야、學校職員의 參考에 資세호노
니、職員은此를熟讀하야學員學徒에게其要領을 教授할것은 勿論이어나

와, 一般周圍의各人에게 향하야도祝祭日의意義를說明함을 望호노라.”
 (‘축제일에는 천황께서 궁중에서 제사를 거행하고, 각 관가와 학교 등은 휴업하고 일반 인민은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하여 그 성의를 포함으로 예로 삼는다. 이제부터 조선에서도 내지와 동일하게 이 예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병합 후 아직 시간이 짧으니, 따라서 제국축제일의 의의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자가 적지 않으니, 이에 축제일약해를 만들어서 주의서 訂正表 뒤에 첨부하여 학교직원의 참고에 도움이 되게 한다. 직원은 이것을 숙독하여 學員學徒에게 그 요령을 교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도 축제일의 의의를 설명할 것을 희망한다.)
 (내무부 학무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並=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關スル教授上ノ注意並=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朝鮮譯文), 1910, 頁15)

1911년 출판된 중국어 회화교재 『漢語獨學』에는 축제일로 제정된 天長節(11월3일)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는데 그 예문은 아래와 같다.

- ① A : 今兒多外頭兒家家門口兒都掛旗子哪。
 오늘에는집마다국기를다렸구려
 B : 不錯、今兒是十一月初三、是天長節。
 그렇소, 오늘은 十一月初三日 인덕天長節이올시다
 A : 天長節是甚麼節呢?
 던장절은무슨축일이오닛가
 B : 就是貴國的萬壽節、是皇上的壽生日。
 貴國으로는 萬壽節인덕天皇陛下의誕生日이올시다
 (『漢語獨學·頁37』)

위의 예문을 통하여, 11월 3일은 일본 천황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天長節로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을 한다는 사실과 天長節과 같은 것으로 중국에는 옛 중국 천자(天子)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萬壽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고찰로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並=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關スル教授上ノ注意並=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의 내용처럼 한일합방 이후 韓國 황제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乾元節을 폐지하고, 일본 천황 탄생일을 기념하는 天長

節을 나라의 축제일로 삼아 한국에서 일장기가 휘날리도록 가르쳤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조약이 선포된 지 얼마 안 된 1911년 4월 도서검열을 통과한 宋憲奭의 『漢語獨學』 중국어회화교재에 일본천황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예문이 실릴 정도였으니, 일본이 일본제국주의의 영속화를 목표로 한국인을 황국신민화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얼마나 한민족 언어문화 말살정책을 철저히 시행하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음은 韓國 각 학교에서 韓國 황제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乾元節을 폐지하고 일본 천황의 탄생일을 기념하라고 교수한 天長節에 대한 일본 내의 보도상황이다. 天長節을 나라의 축제일로 삼고 한국에서 일장기가 휘날리도록 가르친 사실은 1910년 11월 3일 일본 『大阪朝日新聞(오사카아사히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2] 『大阪朝日新聞(오사카아사히신문)』(1910.11.3.)

이 그림은 '첫 번째 천장절(天長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첫 번째'란 한일병합 후 최초라는 의미이며, 위의 그림과 같이 조선에 일장기가 휘날리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 국민은 1910년 8월 한일합방이후 3개월도 채 안되어 韓國 황제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乾元節은 온데 간 데 없어지고 일본 천황의 탄생일을 기념하게 되었고, 나라 잃은 설움을 호소할 길도 없이 말과 글을 일본제국주의에게 검열 받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아래 [그림3]은 1909년 『東京二六新聞(도쿄니쿠로신문)』 10월 31일자 보도로 10월 26일 이토히로부미가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된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사진이다.



[그림3] 『東京二六新聞(도쿄니쿠로신문)』(1909.10.31.)

이 그림은 巨船 니혼마루(日本丸)가 한국을 끌고 가고 있는데, 그 고삐를 폭동이라는 손도끼로 자르는 일은 한국 스스로가 조남을 자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던 것은 아래 [그림4] 『二六新聞(니쿠로신문)』(1910.9.2.)에 보도된 바와 같은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림4) 『二六新聞(니쿠로신문)』(1910.9.2.)

이 그림의 삽화는 일본과 조선반도 사이에 가랑이를 벌리고 있는 일본인이 땀을 흘리며 '동양평화'라는 짐을 힘을 다해 지고 있으니, 한일합병은 정의로움을 내세우는 정당한 일이라는 것을 묘사한 그림이다.¹²⁾ 이와 같이 일본은 한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며 일국의 이품을 '폭동'이라는 말로 신문을 도배질하거나 일본이 마치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해결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은 1897년과 1898년 동아시아 문제와 중국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東亞會와 同文會를 결성하였다. 東亞會는 메이지 30년(1897년) 봄 동아시아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결성되었고, 同文會는 메이지31년(1898년) 6월 近衛篤磨를 중심으로 중국문제를 연구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중국인과 일본인의 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 후 이 모임은 1898년 11월 합병되어 東亞同文會로 개칭하여 운영되었다. 이 東亞同文會 사업의 일환으로 1901년 장차 대륙 침략 실무에 필요한 중국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해외 중국어 교육기관으로서 당시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이었던 상해에 〈東亞同文書院〉을 설립하게 된다. 東亞同文會의

12) 유모토 고이치(湯本豪一), 연구 공간 수유+너머 동아시아 근대 세미나팀 옮김, 『일본 근대의 풍경』, pp.142-143

綱領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綱領

1. 지나를 보전한다.
2. 지나와 조선의 개선을 돕는다.
3. 지나와 조선의 시사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실행한다.
4. 국론을 환기시킨다.

제1항과 제2항을 보면 일본 본인들의 도움을 통해 열강에 침략당하는 중국을 보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근대국가 단계로 아직 접어들지 않았던 조선과 봉건 말기 각종 문제로 혼란스러웠던 중국을 도와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일본의 취지를 엿볼 수 있다.¹³⁾

위의 내용으로,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관한 教授上의 注意」(附錄 祝祭日略解))에 근거하여, 『漢語獨學』(1911)과 『大阪朝日新聞(오사카아사히신문)』(1910.11.3.)에는 한국 국민이 한일합방과 더불어 일본제국의 축제일을 준수해야 할 것과 축제일에 대한 요령과 그 의의 등이 매우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5) 皇室(皇帝)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관한 教授上의 注意」)(附錄 祝祭日略解)에는 황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13) 소은희, 『華語萃編(初集)研究』 - 출판배경과 문법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中國言語研究』, 第46輯, pp.195-200.

“舊學部檢定及認可圖書中前韓國皇室에關한記事를揭한者-有한니、如斯한教材는今日에그되로此를教授하기不可함은言을不俟한지니、教師는宜其左記各項의趣旨에依하여訂正教授할지라

一、日韓併合의結果로朝鮮人의奉戴한皇室은大日本 天皇陛下、皇后陛下及皇族인事、

二、歷史等書中에現在 天皇陛下에關한記事에“日本國天皇게셔는”等으로記하여敬稱을不用한者-有한니、如斯한境遇에는必“陛下”라는敬稱을附加하여“日本國天皇陛下의옵셔는”이라함과如히訂正教授할事、……”

(舊學部 검정 및 인가도서 가운데에는 전 한국 황실에 관한 기사를 쓴 것이 있으니, 이러한 교재는 지금 그대로 이것을 교수하는 것이 불가함은 말할 필요가 없으니, 교사는 마땅히 아래 각 항의 취지에 의하여 정정하여 교수해야 한다.

1. 日韓併合의 결과 조선인의 공경하여 높이 받드는 황실은 대일본 天皇陛下, 皇后陛下 및 황족이다……’

2. 역사 등 교과서에 현재 천황폐하에 관한 기사에 “일본국 천황게셔는” 등으로 기재하여 경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폐하”라는 경칭을 더하여 “일본국천황폐하께옵셔는”이라 하며, 이렇게 정정하여 교수하여야 한다. ……’)

(內務部學務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並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並ニ字句訂正表」(附錄祝祭日略解)(朝鮮譯文), 1910, 頁10.)

1910년 한일합방 결과 조선인이 공경하고 높이 받들어야 할 황실은 일본 천황이라고 명시한 조항을 중국어회화교재 『漢語獨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A: 是的、日本の皇帝今年高壽了?
그렇소、日本皇帝陛下는今年에春秋가얼마시오
- B: 今年六十歲了。
今年에六十歲시오
- A: 聽說是天聰最高。
드르니 天聰이무우높히시다시오
- B: 不錯、很有天聰、並且很知道下民的事情、左右的官都敬畏他。
그렇소매우충면한시고또下民의시정을잘살피사左右의臣子가다敬畏합니다
(『漢語獨學』· 頁38)

위 예문을 통해 일본 황제는 금년(1911년)에 60세이며 매우 총명하고, 좌우의 신하가 그를 모두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천황 숭배사상은 당시 한국인이었던 저자의 편찬의도와는 상관없이 1910년 8월 22일 체결, 29일 반포된 전문 8조로 된 '한일합병조약'의 영향과 일제의 교과서 검열 정책에 의해 의도적으로 교재에 실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漢語獨學』에서는 나라 잃은 슬픔이나 아픔을 표현해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아마도 한국의 일제강점기 도서 검열 정책이 반영된 상흔 문학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고찰한 몇 권의 중국어교재 외에도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 교재 중 李起馨이 편찬한 『官話華語教範』(1915), 『華語新編』(1918), 『初學時文必讀』(1923)에는 첫 페이지에 '조선총독부 경무국보전본'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데 역시 이 책들도 도서검열을 통과하고 경무국에서 출판을 허가 받은 책임을 알 수 있다.

3. 나오는 말

지금까지 본 논문은 1910년 조선총독부 소속 內務部學務局이 발포한 문서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並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並ニ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의 규정을 근거로, 일제강점기 중국어 회화교재 『漢語獨學』(1911), 『華語精選』(1913), 『自習完壁支那語集成』(1921), 『無先生速修中國自通』(1929), 『(北京官話)支那語大海』(1938)와 일본의 『大阪朝日新聞(오사카아사히신문)』, 한국의 『동아일보』 등 각종 신문의 삽화와 광고 등 각종 매체에 나타난 시각자료들을 이용하여,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민족 언어·문화 말살정책의 실시로 나타난 언어·문화상을 살펴보았다.

위의 고찰을 통하여, 일제의 언어·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국호가 종전의 '大韓'에서 '朝鮮'으로 바뀌고, 연호가 '隆熙'에서 '明治'로 바뀐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한국의 수도 '漢城'이 '京城'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 황제의 탄생일 '乾元節'이 일본 황제의 탄생일인 '天長節'로 대체되어 기념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실례로 나타나듯 일본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並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並ニ字句訂正表(구학부 편찬 보통학교 교과서와 구학부 검정 및 인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교수상의 주의와 자기 정정표)」에 따라, 헌병 경찰제도 시기 교과서 편찬과 출판 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언어와 사상을 말살하며, 일제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매체와 도서에 강력한 검열 정책을 실시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다.

헌병 경찰제도 시기 강력히 시행했던 도서 검열 정책은 1919년에 와서는 문화 정치로 노선을 바꾸어, 겉으로는 검열 정책을 풀어주는 척하며 한국인들을 이간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민족지도자나 애국청년들의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항거가 계속되자 1925년에 경무국의 예하부서로써 도서과를 신설하여 도서검열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수입 되는 출판물까지 차압 처분을 명령하여 철저하게 정치적 도서 검열 정책을 펴나갔다. 이후 1936년 南次郎이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후 민족말살정치가 이루어지자 도서 검열은 더욱 철저하게 실시되었다. 내선일체와 선만 일여의 구현을 위하여 많은 검열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미 출판된 도서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했기 때문에 사실상 도서 출판을 불가능하였다.

국권을 상실시킨 후 일제는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35년간 한국 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하기 위하여 말과 글을 빼앗고, 역사를 말살하고, 민족의 얼마저 없애기 위한 온갖 책동을 벌이며, 경제적 수탈까지도 감행하였다. 교육의 본질과 그 힘의 위력을 알았던 일본 식민통치자들은 한민족의 지적·인격적 성숙을 말살시키기 위해 공사립의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국민을 우민화 및 일본인화 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통제는 조선총독부의 도서 검열정책을 통한 교과서 정책으로 반영되었고, 조선총독부의 교과서편찬 관련 자료에 구체화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일본은 더욱더 악랄한 식민지 교육 정책, 교과서 정책아래 교과서의 검열여부에 따라 반포 금지를 시켜나갔는데 이러

한 시책은 이후 제 1, 2, 3, 4차 조선교육령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제의 언어·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수도 '漢城'이 '京城'으로 바뀌어 광복 70년을 맞는 오늘까지도 TV 사극이나 도서 등의 매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¹⁴⁾을 헤아려 볼 때, 실로 식민지 교육의 잔재와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엿보게 한다. 이러한 사실은 언어와 문화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상호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14) 『한국 근대사의 풍경: 철도』이란 책에서 서울역을 설명하는 부분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경성 역사는 완공 당시 경성 부민들의 입을 짝 벌어지게 만들었던 건축물이었다'. p.36.

〈參考文獻〉

- 宋憲奭, 『改正增補漢語獨學全』, 京城: 廣益書館, 1924.
- 宋憲奭 著, 朴在淵·金雅英 校注, 『改正增補漢語獨學』, 牙山: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2008.
- 宋憲奭, 『自習完壁 支那語集成』, 德興書林, 京城, 1921.
- 高永完, 『高等官話 華語精選』, 京城: 普昌書館, 1913.
- 高永完 著, 李厚日·金雅英 校注, 『高等官話 華語精選』, 牙山: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2008.
- 姜義永 編, 發行『無先生速修 中國語自通』, 京城: 永昌書館, 1929.
- 李起馨 著, 陳國棟 閱, 『官話 華語教範』, 京城: 普昌書館, 1915.
- 李起馨 著 陳國棟 閱, 이후일 김아영 校註『官話 華語教範』(鮮文大學校中韓翻譯文獻研究所, 2008).
- 白松溪 著『無先生速修 中國語自通』(鮮文大學校中韓 翻譯文獻研究所의 교주본 2008).
- 文世榮 著, 『(北京官話) 支那語大海』, 永昌書館, 1938.
- 文世榮 原著, 李厚一, 金雅瑛 校注, 『(北京官話) 支那語大海』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2008.
- 저자미상, 『無先生速修 中國語自通』, 永昌書館, 京城, 1929.
- 內務部學務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並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 教授上ノ注意並ニ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 (朝鮮譯文), 1910, 국립중앙도서관.
- 國際아카데미 편, 『植民地朝鮮教育政策使料集成』 第18卷, 2002.
- 남윤순, 「1910년대, 1920년대 중국어 교재 연구 -『官話 華語教範』(1915), 『無先生速修 中國語自通』(1929)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노형석, 『한국 근대사의 풍경』, 생각의 나무, 2004.
- 박익수·강승규·정영수·강선보,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동문사, 2002.
- 백지연, 「일본식민지시기 중국어회화교재 어휘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연구 -『自習完壁 支那語集成』과 『無先生速修 中國語自通』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소은희·김미은 저,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교재 『自習完壁支那語集成』과 『無先生速修中國語自通』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연구」, 중국문화연구학회, 『中國文化研究』, 第12輯, 2008.
- 소은희·심영숙, 「日本殖民地時期 중국어회화교재 『改正增補漢語獨學』(1911)에 나타난

- 일본의 대조선 교육정책 고찰, 중국문화연구학회, 『中國文化研究』, 第14輯, 2009.
- 소은희, 『『華語萃編(初集)』研究 - 출판배경과 문법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韓國中國言語學會, 2013.
- 신윤희, 「일제말 제3차 조선교육령기의 중국어교재 연구: 『(北京宮語) 支那語大海』와 『速成自習 標集 支那語教程』의 언어현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 심영숙, 「일제식민지시기 중국어회화교재 『改正增補漢語獨學全』, 『高等官話華語精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년.
- 신형식·이배용 편저,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7.
- 오환일·박정근·김창겸·김형목·김인식·김은국·김덕원·김준혁·김범 공저, 『강좌 한국사』, 서울: 도서출판 신정, 2003.
- 유모토 고이치 지음, 『일본 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4.
- 이주연, 「1910년대 중국어 회화교재 연구 -『速修漢語大成』(1918)과 『速修漢語大成 官話華語新編』(1918)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년.
- 鄭在哲, 『日帝의 對韓國殖民地教育政策史』, 서울: 一志社, 1985.
-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警務月報』 제11호,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1911.
- 朝鮮總督府編纂, 『教科用圖書一覽』, 1913, 국립중앙도서관.
- 朝鮮總督府編纂, 『朝鮮法令輯覽全』, 1941, 국립중앙도서관.
-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2001. 12.
- 韓基彦·李啓鶴, 『日帝의 教科書政策에 관한 研究』,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함종규, 『한국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2003.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 - 일제강점기 학교교육』, 1997.

〈中文提要〉

本论文以日据时期汉语会话教材『改正增补汉语独学』(1911)、『华语精选』(1913)、『自习完璧支那语集成』(1921)、『无先生速修中国自通』(1929)、『(北京官话)支那语大海』(1938)、报纸、画报为语料,考察了日制强占期日本的图书审查政策所带来的影响。日制强占期日本想通过殖民政策这一环抹杀掉韩国的语言和思想,使之同化於日制统治下,实施了强烈的读书审查政策,把教育救国运动作为噱头,教科书的编纂,出版法的改订等都在统监府的领导下处理了。

日本帝国主义为强占朝鲜,阶段性地实施了1910年8月29日颁布的『韩日合并条约』。由隶属于朝鲜总督府的内务部学务局颁布的『旧学部编纂普通学校用教科书并二旧学部检定及认可ノ教科用图书二关スル教授上ノ注意并二字句订正表』(附录祝祭日略解)是预先设好的布局。在『旧学部普通学校用教科书二关スル注意书(对於旧学部普通学校用教科书的注意书)』出现的图书审查事项如下。①与国号有关事项②与年号有关事项③与庆典日有关事项④与皇室有关事项⑤与制度有关事项⑥与历史事实有关事项。

日本殖民统治者以公私立学校教育为中心,对韩国国民实施愚民化和日本人化政策,妄图通过教育抹杀韩民族的语言、文化。在汉语会话教材中充分反映了日本的这一阴谋。其内容如下:将国号由“大韩帝国”改为“朝鲜”,年号由“隆熙”改为“明治”,首都由“汉城”改为“京城”,“天长节”定为节日。

此论文通过日制强占期汉语会话教材和各种报纸插图,直观和客观地展现了依据注意书所制定出的图书审查政策的样子。这其中包含至今也可以在媒体上很容易看到朝鲜的首都汉城叫京城的现象。目前,通过这样的语言文化抹杀政策,至今在语言词汇使用上仍然可见残存的现象,此事实可以证明语言和文化是不可分割的一个整体。

關鍵詞: 日据时期, 语言文化抹杀政策, 汉语会话教材, 报纸, 画报, 语言文化现象

이 논문은 2015년 7월 22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8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